

# 低所得 母子家口の 住居實態 및 住居福祉欲求

李台眞·盧彦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 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 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저소득 모자가구, 빈곤의 여성화,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 I. 序 論

한국사회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성공적인 산업화와 공업화의 결과로 국가경제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번영의 그늘에 가려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대 빈곤층은 물론, 상대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세한 계층의 주민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급속한 경제사정의 약화는 중산층의 몰락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악화를 가지고 왔으며, 최근의 경제회생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아직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계층 또는 집단 중에서 특히 모자가구는 정부가 절대빈곤계층으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자 가운데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취약한 가정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적 차원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있다. 또한 모자가구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Feminization of poverty)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인해 사회복지뿐 아니라 여성복지의 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최선화 외, 1997).

국내에서도 모자가구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모자가구의 자립방안에 초점을 두고 생활실태, 복지욕구, 가족 및 사회관계 및 적응 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모자가구의 자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이미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언급은 경제적 빈곤에서의 극복을 위한 방안

의 하나로서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다수 언급되기도 한다. 모자가구는 자녀양육에의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주거환경확보가 시급하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소득 모자가구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수현, 2001; 김인숙 외,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여성부, 2001; 조홍식 외, 2002; 한국여성개발원 1998, 2000).

그러나 실제로 저소득모자가구의 주거실태가 어떠한고 그 욕구는 어떠한지, 그리고 주거에 있어 가구 특성이 저소득층 전체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주거관련실태조사는 아직 부족한 편이며, 실태에 기반을 둔 정책 제안 또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에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理論 및 先行研究

### 1. 貧困의 女性化(Feminization of Poverty)

오늘날 빈곤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이혜경, 1995; 유정원, 2000; 김수현, 2001).

여성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또는 소득획득능력의 차이

에 기인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빈곤과 성(gender)간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통해 설명된다(이혜경 1998; Pearce, 1978).

예를 들어, Smith(1986)같은 학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여성화가 지속되는 것은 서비스부분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은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고, 동시에 파트타임의 증가와 저임금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며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 빈곤의 원인을 찾았다(정미숙, 2000). 또한 Doeringer와 Piore(1971)는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양호한 노동조건, 고용의 안정성, 내부승진의 기회 등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승진기회의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이 때 여성은 가사노동의 부담과 낮은 경력, 조직력의 결여 등으로 주로 2차 노동시장에 머물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중 노동 시장론을 주장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편, 이원화된 복지체계와 가부장적 남성부양체계 및 보호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 또한 여성빈곤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여성학자들은 복지국가가 노동의 성별 분리에 기반한 남성부양체계를 지속시키고 무급 재생산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고수하는 이원화된 복지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중심노동력을 구성하는 남성의 경우 실직시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지만, 노동시장의 주변노동력을 구성하는 여성의 경우 자산평가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되고 있고, 이는 결국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거나 남성에의 의존성을 강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Daly, 1994; Leira, 1992; O'Conor, 1993; Orloff, 1993). 또한 Sommestad(1998)는 보살핌 또는 보호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남성은 주된 생계책임

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성별 노동분업체계인 가부장적 남성부양체계는 보호노동의 무급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terson(1987)은 미국에서 70년대 이후 동안 빈곤가구 중 특히 여성 가구주 가구가 높은 비율로 증가했음을 주목하면서, 이혼율의 증가 등에 의한 가족구조의 변화, 이중노동시장, 여성의 육아부담, 차별 등에 의한 노동시장이 성차별적 구조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의 삭감 등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보았으며, Northrop(1990)은 빈곤의 여성화를 전체 빈곤인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에 거주하는 빈자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여성가구주 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대하거나 또는 기타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감소한다면 빈곤의 여성화가 진전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59~1986년간에 걸쳐 이혼율 증가, 무의탁 여성노인의 증대 등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있었고, 이는 빈곤의 여성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했음을 보고하였다.

Mclanahan외(1989)는 미국의 1950~1980년간 남녀간 빈곤차이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절대적 빈곤율은 감소경향을 보인 반면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그 상대적 비율의 지속적 확대로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이의 원인으로는 연령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남성에게 유리한 출산율의 하락과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 부모책임에서의 남녀간 차이가 변화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은 노동시장내 여성의 저임금직 확대와 여성가구주를 위한 복지급여수준의 삭감 등으로 인해 개선의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하였다.

Goldberg와 Kreman(1990)은 국가간 비교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여성화가 선진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여성에게 제공되는 공적 복지 급여수준과 함께 여성 가구주 가

구의 비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실업, 여성의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관련요소, 노동시장내 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등의 여러 요소들이 여성의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양호한 노동시장조건과 후한 복지급여가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감소시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일본은 매우 불평등한 노동시장조건과 낮은 복지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적음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는 주된 관심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ressman(2002)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구의 구 사회주의 국가 등 23개국을 대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와 기타 가구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양 집단의 빈곤율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간의 빈곤차이가 나라별로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곤차이의 경향은 크게 유동적이지 않음을 보였다. 즉, 일정 시점에서 남녀간 빈곤차이가 작은 국가들은 다른 해에서도 작은 빈곤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에서 남녀간 빈곤차이는 시점간 차이보다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때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국가의 남녀간 빈곤차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시적인 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화의 효과보다는 그 사회의 가족이데올로기, 여성취업과 임금 등에 대한 관행, 습관 등이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연구는 계급간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쟁점화 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영역 밖에 존재하였고, 따라서 여성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실제로 몇몇 여성빈곤에 대한 실태연구들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경향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내 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계층의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성(gender)과 빈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최근에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이혜경,

1988; 유정원, 2001; 전지혜, 2002).

빈곤의 여성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저소득 모자가구 혹은 모자세대, 여성가구주에 대한 생활실태나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저소득 모자가구의 자립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가족보호·주거지원·건강지원·사회심리적 지원 등이 가구 특성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김미숙, 2000; 김수현, 2001; 정미숙, 2001).

## 2. 貧困과 住居

우리 사회에서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생 중 상당기간에 걸친 계획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 주택 마련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생계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으로서는 주택 구입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김인숙 외, 2001). 하지만, 동시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주거의 안정화는 곧 생활의 안정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한다. 빈곤상황에서 주거빈곤의 위상에 주목할 때, 주거빈곤은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빈곤 상황과 주거빈곤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빈곤층을 더욱 빈곤의 늪으로 몰아넣으며, 반대로 주거빈곤의 극복은 전반적인 빈곤의 극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대한주택공사, 1998). 즉, 주거는 생활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생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Bryan Roberts, 1995). 이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단순한 주거의 안정성 보장을 넘어서, 빈곤극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활발해진 여성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저소득모자가구 혹은 여성가구주의 자립방안 중 하나로 주거의 안정성을 손꼽고 있으며(김수현, 2001; 정인숙, 2001; 여성부,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한국여성개발원, 1998, 2002),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생활실태조사의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저소득 여성가구주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 중 주택 마련 및 확장을 위한 주거비 마련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울시정개발원(2001)의 연구에서도 정부의 지원정책 중 희망하는 정책에서 주택자금용자가 생활비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해결되기 바라는 가정문제에서도 주거안정이 취약자녀의 교육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지되고 있어 주거안정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김미숙 외(2000) 및 이선우 외(2002)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모자가구 및 저소득층의 주거관련 욕구 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경제적 빈곤에의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모자가구의 특성상 자녀양육과 관련되어 다수 언급되고 있다. 저소득 모자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분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자가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견해를 보이고도 있고, 모자가구의 특성상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녀양육이 선행되는 문제라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최선화 외, 1997). 그러나 일반 저소득 가구보다 모자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해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즉,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보다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적합한 주거환경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거의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것이 다시 저소득 모자가구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수현, 2001; 김인숙 외,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여성부, 2001; 조홍식 외, 2002; 한국여성개발원 1998, 2000).

### Ⅲ. 分析資料의 特性 및 內容

#### 1. 分析資料의 特性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개발원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의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자세한 조사개요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모집단은 주거빈곤가구이며, 조사모집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층이다. 차상위층은 수급신청자 중 탈락자와 공공근로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추출을 위해 전국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자세한 표본추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거·소득빈곤가구의 모집단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 지역별 수급자 분포에 따라 표본가구수를 할당하여 이에 따라 해당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2개의 읍·면·동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각 읍·면·동의 조사대상자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8:2의 비율로 배분하여 해당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조사지역 중 서울, 광주, 안산 등은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었고 경남 산청, 전북 정읍, 충남 보령, 경기도 양평군 등은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지역내 동(洞) 선정은 수급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조사지역은 다음 <表 1>과 같다.

조사는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면접조사를 하는 방

식을 활용하였다. 각 지역당 200가구씩 총 1,400가구를 조사하였고, 지역 내 동 당 100가구를 조사하였다. 최종 유효표본수 1,206개로 응답률은 86%이며, 이중 가구 형태상 모자가구로 분류된 가구수는 총 215가구로 전체의 17.9%이다. 한편, 조사는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주거유형 및 주거비용, 주거환경 및 주거만족도, 주거이동 및 선택, 복지프로그램 수혜현황 및 희망사항, 주거의식 등의 총 6개 부분의 주거 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表 1〉 調査地域

지 역	해당 동(洞)
서 울	동작구 대방동, 상도 5동
광역시	광주시 서구 관천동, 부산시 사하구 덕포 1동
중소도시	전북 정읍시, 충남 보령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광명시
군 지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남 산청군 서천면

## 2. 分析方法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파악하였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석을 위해서 헤도닉 함수 추정을 활용하였다.<sup>1)</sup> 자료의 분석을 위해선 SPSS window 10.0을 활용하였다.

1) 헤도닉 가격 함수(hedonic price function) 추정은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비 지출액(housing expenditure)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요속성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각 속성 1단위가 증가하면 매매가격 혹은 임대료가 몇 % 상승하는가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어 단위가격을 구하는 방식임. 자세한 헤도닉 함수 추정방식은 뒤에 분석결과에서 설명되어 있음.

## IV. 分析結果

### 1. 一般的事項

전체 조사대상 모자가구 중 수급자는 185명(86.0%)이고 차상위층은 30명(14.0%)이다.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하여 수급자 모자가구는 서울과 광역시에, 차상위층 모자가구는 군지역에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2〉 調查對象者の 分布

(단위: 명, %)

	구 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저 소득층	수급권자	246( 87.5)	178( 80.9)	353( 84.9)	233( 80.6)	1,010( 83.7)
	차상위층	35( 12.5)	42( 19.1)	63( 15.1)	56( 19.4)	196( 16.3)
	전 체	281(100.0)	220(100.0)	416(100.0)	289(100.0)	1,206(100.0)
모 자 가 구	수급권자	43( 93.5)	48( 92.3)	78( 86.7)	16( 59.3)	185( 86.0)
	차상위층	3( 6.5)	4( 7.7)	12( 13.3)	11( 40.7)	30( 14.0)
	전 체	46(100.0)	52(100.0)	90(100.0)	27(100.0)	215(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육구」 조사의 원자료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대표성을 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2002)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자료와 비교하여 본 결과, 전체 수급자 중 모자세대가 10.1%, 그 중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이 48.4%이었고, 김미숙 외(2000)의 '편부모 가정 전국조사'에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분포도 대도시 42.7%, 중소도시 39.5%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3〉 調査對象者の 地域別 分布

(단위: 명, %)

구 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저소득층	281(23.3)	220(18.2)	416(34.5)	289(24.0)	1,206(100.0)
모자가구	46(21.4)	52(24.2)	90(41.9)	27(12.5)	215(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1) 家口特性

가구특성에 있어서는 모자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2.7명,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6.9세,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43.8%, 소득은 월평균 65.23만원으로 저소득층 전체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단, 表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자가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전체의 3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의 1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가구특성을 볼 때 저소득층 전체에 비해 모자가구의 가구주는 저연령, 고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소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 家口特性 比較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평균 가구원수(명)	2.3	2.7
가구주 연령(세)	57.4	46.9
학력(초등졸 이하, %)	60.3	43.8
소득(만원)	53.6	65.2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2) 經濟活動狀態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시고용으로 취업한

비율은 전체의 11.2%이며 일용직은 전체의 26%에 달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해 보면, 상시고용으로 취업한 비율이 모자가구가 높은 반면, 일용직 비율 또한 높아 고용의 양분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表 5〉 家口主의 經濟活動狀態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전일취업(상시직)	90( 7.5)	24( 11.2)
전일취업(임시직)	45( 3.8)	17( 7.9)
일용직	187( 15.6)	56( 26.0)
시간제 아르바이트	67( 5.6)	37( 17.2)
직장없이 구직활동 중	29( 2.4)	5( 2.3)
직장없이 구직활동 포기	29( 2.4)	5( 2.3)
직업훈련 등 기술교육	3( 0.3)	1( 0.5)
학업 및 진학준비	26( 2.2)	1( 0.5)
보육, 간병, 가사	125( 10.4)	16( 7.4)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음	554( 46.3)	50( 23.3)
기타	42( 3.5)	3( 1.4)
전체	1,197(100.0)	215(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육구」 조사의 원자료

직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전체의 2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부가 25.1%이며, 서비스 및 판매직이 15.8%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의 36.6%가 무직인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하면, 모자가구의 경우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6〉 家口主의 職業職種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생산직	12( 1.0)	8( 3.7)
사무직	7( 0.6)	4( 1.9)
서비스 및 판매직	69( 5.8)	34( 15.8)
단순노무직(건설일용직)	188( 15.7)	63( 29.3)
자영업	55( 4.6)	12( 5.6)
가내수공업	14( 1.2)	5( 2.3)
공공근로/자활사업	60( 5.0)	13( 6.0)
학생	28( 2.3)	1( 0.5)
주부	315( 26.3)	54( 25.1)
무직	438( 36.6)	21( 9.8)
기타	12( 1.0)	-
전 체	1,198(100.0)	215(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2. 住居關聯 特性

### 1) 住居特性

주거유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전체 조사에서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용 단독주택 순으로, 저소득층 모자가구 조사에서는 아파트, 다가구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가구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전체조사 및 모자가구조사에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저소득층 및 저소득 모자가구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해 볼 때 모자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구(영구임대아파트 포함)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순위에서 모자가구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7〉 住居特性 比較

(단위: %, 만원)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사용면적(평)		10.0		11.5	
사용방수(개)		1.8		1.9	
주 택 유 형	단독주택	38.1	49.7*	21.9	31.7*
	다가구용 단독주택	20.6	25.7*	29.3	43.4*
	다세대주택	2.0	2.4*	2.8	3.4*
	연립주택(빌라)	2.9	3.8*	4.2	6.2*
	아파트	28.7	3.5*	36.3	6.9*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2.2	2.9*	1.9	2.8*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등)	1.0	1.3*	2.3	3.4*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2.9	3.8*	-	-
	기타	1.5	2.0*	1.4	2.1*
점 유 형 태	자가	15.6		7.9	
	전세(독채)	5.1		6.5	
	전세(일부)	14.3		16.3	
	보증부월세	39.6		50.7	
	무보증월세	3.8		3.7	
	사글세	4.9		5.1	
	무상	16.3		9.3	
	기타	0.3		0.5	
부 역	단독사용비율	92.3		96.3	
	입식비율	81.0		86.5	
화장실	단독사용비율	68.9		75.3	
	수세식비율	64.7		74.9	
목욕탕	단독사용비율	54.1		68.8	
	온수비율	71.7		81.4	
출입구	단독사용 비율	63.3		67.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자가주택 가격	2,694.9		2,747.1	
	전세보증금	1,367.6		1,579.4	
	월세	8.2		8.0	
현재 주택 거주기간(년)		9.2		6.0	

註: \*는 영구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제외한 수치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점유형태별로는 모자가구의 경우 전체의 50.7%가 보증부 월세, 자가는 7.9%로 일반저소득층에 비해 보증부 월세가 훨씬 높으며, 자가의 경우 저소득층 전체의 절반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선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시설사용에 있어서 모자가구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보다 다소 나은 상황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 주택 가격의 경우 모자가구가 저소득층 전체보다 자가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등에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크게 차이는 없으며, 월세는 거의 8만 2천원, 8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주택에서 평균거주기간은 6.0년으로 나타났다(表 7 참조).

## 2) 住居移動

### (1) 居住期間 및 移徙回數

최근 5년간 이사횟수는 1.49회로, 저소득층 전체 1.0회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또한 평균거주기간은 6년으로 저소득층 전체 평균 9.2년보다 짧게 나타났다. 이처럼 모자가구는 비교적 잦은 이사와 지속적이지 못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로 주거생활의 변화를 겪고있음을 알 수 있다(表 8 참조).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문제의 이중적 부담을 갖고 있는 모자가구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表 8〉 居住期間 및 移徙回數

(단위: 년, 회)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현 주택 거주기간	9.2	6.0
최근 5년내 이사횟수	1.0	1.49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2) 住宅移動 事由

이전의 주택에서 이사를 하게 된 사유와 현재 주택을 선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9 참조). 전 주택에서 이사를 하게 된 사유는 전·월세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전 주택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란 응답 순이었다. 저소득층과는 다르게 모자가구에서는 가족수의 변화가 주요한 이사 이유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모자가구의 발생 및 발생후의 가족유형변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表 9〉 前 住宅에서 移徙를 하게 된 理由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재개발 등으로 철거되어서	8.3	8.4
이전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8.7	16.4
소득이 증가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2.8	0.9
전·월세의 인상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	26.6	19.6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9.5	13.6
결혼 등으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3.1	5.1
소득감소	11.3	7.9
기타	19.6	28.0
전 체	100.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육구」 조사의 원자료

전 주택에서의 이사사유와 다르게 현 주택을 선택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모자가구와 전체 저소득층 모두 이전 주택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옛부터 살던 곳이여서의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친척이나 친구 등의 지지망형성이 거주지결정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자가구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권유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이는 모

자가구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주는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교육때문이라는 이사사유도 7.5%로 일반 저소득층의 2배가 넘게 나와, 모자가구 주거지 결정에 자녀교육 및 양육의 적합한 주거환경변인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10 참조).

〈表 10〉 現 住居地域을 선택한 理由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이전 주택에 비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싸서	31.7	34.3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5.2	3.3
친척이나 친구와 가까워서	18.1	13.6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3.2	1.9
주변환경이 좋아서	6.5	3.3
직장이나 사업체 등이 가까워서	2.9	3.8
자녀 교육환경 때문에	3.3	7.5
옛부터 살던 곳이라서	13.0	11.7
기타	11.3	8.9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권유	4.9	11.7
전 체	100.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3) 移徙計劃 및 希望住宅

이주 희망에 대한 설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여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다는 응답 또한 14.4%에 이르렀다. 전체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볼 때, 이사에 대한 욕구가 다소 높고 실제로 이사행위로 옮기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전체에 비해 모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다소 낮은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表 11참조).

〈表 11〉 移徙 計劃 및 希望與否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사할 수 없다	240( 20.2)	65( 30.2)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여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다	47( 4.0)	31( 14.4)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구체적 계획은 없다	149( 12.5)	15( 7.0)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755( 63.4)	104( 48.5)
전 체	1,191(100.0)	215(100.0)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지만 이사할 수 없다는 응답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모자가구, 저소득층 전체 모두 비싼 임대료 때문이 약 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대부분 싼 임대료 때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싼 주거지를 찾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表 12 참조). 이 사시 희망하는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양쪽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적정 주택가격은 평균 8000만원, 전세 보증금은 2291만원, 월세보증금은 평균 800만원으로 나타나, 7160만원, 2069만원, 661만원인 저소득층 전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表 13 참조).

〈表 12〉 移徙할 수 없는 理由

(단위: 명,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비싼 임대료 때문에	214( 89.5)	57( 89.1)
교통이 편리해서	2( 0.8)	1( 1.6)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 때문에	2( 0.8)	-
직장이나 사업체 때문에	3( 1.3)	2( 3.1)
자녀교육 때문에	6( 2.5)	2( 3.1)
편의시설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0( 0.0)	-
기타	12( 5.0)	2( 3.1)
전 체	239(100.0)	64(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表 13〉 希望住宅

(단위: 명, %, 만원)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희망주택	단독주택	25(45.5)	8(50.0)
	아 파 트	24(43.6)	8(50.0)
희망주택 가 격	자 가	7,160	8,000
	전 세	2,069	2,291
	월 세	661	8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3. 福祉受惠現況 및 欲求

#### 1) 住居關聯 福祉프로그램

##### (1) 認知度

주택관련 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영구임대주택으로 모자가구의 85.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전세자금 지원들은 30~40% 정도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집수리사업단에 대해서는 20.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저소득전체와 비교할 때, 모자가구의 경우가 복지프로그램 인지도에서 모두 앞섰으며, 이는 모자가구의 가구주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表 14 참조).

##### (2) 住居관련 福祉프로그램 受惠現況

프로그램별 수혜현황을 보면, 모자가구이면서 수혜를 받지 못한 집단이 57.1%이고 수혜를 받은 집단 중 영구임대주택이 29.8%로 가장 높으며, 그 외 공공임대주택이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집수리 사업단 등은 수혜현황이 매우 낮았다. 인지도와 비교하면, 주택

구입자금지원의 수혜현황이 가장 낮아, 주택구입자금은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의 경우 집수리 사업단을 제외한 전체 복지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혜현황을 보였으나, 차이는 나지 않았다(表 15 참조).

〈表 14〉 住居관련 福祉프로그램 認知度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영구임대주택	72.0	85.6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34.3	40.5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28.2	33.5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31.9	42.8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18.6	20.0

註: 중복응답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表 15〉 住居관련 福祉프로그램 受惠現況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수혜	33.8	42.9
영구임대주택	23.8	29.8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2.6	3.8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1.0	1.4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3.5	5.6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2.9	2.3
비수혜	66.2	57.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3) 住居관련 福祉프로그램 希望程度

현재 운영중인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

구입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공임대·국민임대 순이다. 저소득층 전체에 비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프로그램 희망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주거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表 16 참조).

〈表 16〉 住居 관련 福祉 프로그램 希望程度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영구임대주택	54.4	49.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31.7	48.3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23.0	39.1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24.8	41.9
집수리사업단(주택수선서비스)	23.4	34.4

註: 중복응답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2) 一般 福祉 프로그램

### (1) 政府의 支援이 必要한 部分 및 生活을 어렵게 만드는 支出項目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항목과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는 2개씩 중복응답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항목에선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자가구에서는 교육비 또한 주거비와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나, 모자가구주의 경우 주거비와 자녀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되어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자가구와 저소득층 전체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모자가구에서는 교육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항목과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表 17〉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支出項目

(단위: %)

구 분	저소득층	모자가구
식료품비	34.8	31.1
주거비	22.2	21.8
보건의료비	11.7	6.7
교육비	10.5	21.8
제세공과금	13.2	8.3
부채상환	4.2	6.7
기타	3.4	3.6
전체	100.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表 18〉 政府의 도움이 가장 必要한 支出項目

(단위: %)

구 분	전체	모자가구
식료품비	34.6	30.2
주거비	27.7	27.1
보건의료비	14.0	7.8
교육비	11.3	23.8
제세공과금	11.0	10.6
기타	1.4	0.5
전체	100.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4. 住居費 支拂能力 未達家口 比率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 추정을 위해 헤도닉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비지불능력은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 지불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한 시장임대료를 파악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는 특성감안가격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가격함수는 주택서비스의 임대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택특성(bundles of housing characteristics)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表 19〉 헤도닉 函數 推定結果

독립변수	대도시		독립변수	중소도시	
	계수	std. error		계수	std. error
상수	1.55837704***	0.11402691	상수	0.716358***	0.229234
면적	0.0350807***	0.00784568	면적	0.022486***	0.007244
사용방수	0.13705765***	0.06436918	화장실(전용·현대=1)	0.569671***	0.114437
화장실	0.32505568***	0.07397815	난방방식(현대식=1)	0.464533***	0.13594
채광통풍(5점척도)	0.08165472***	0.03179071	건물경과년수	-0.008090**	0.003161
입지(입지환경양호=1)	0.09915117**	0.06497741	판매시설 만족도	0.133997***	0.04248
			입지	0.371975**	0.157447
R-square	0.40		R-square	0.31	

註: \*\*\* 통계적 유의수준 1% 이내, \*\*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1) 영구임대아파트는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추정

2) 자가가구의 경우 전세금을 월 1%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

3)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자가·전세비율인 0.6895(국민은행 도시주택가격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전세가격으로 환산하고 다시 월임대료로 환산하였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P_h = f(S, E)$$

S는 주택자체의 특성들 주택면적, 사용방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부엌의 식당사용여부, 건축년수, 채광통풍, 누수 등이다. E는 근린환경특성으로서 판매시설만족도, 대중교통 이용만족도와 입지 등을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linear, log, semi-log 등의 형태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P_h$ 에 log를 취했을 때

모델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추정된 특성감안가격함수에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는 주택특성을 대입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시장임대료를 추정하였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최저면적인 3.6평, 2인 가구는 6.1평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 시장임대료이다. 방수는 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을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시장임대료가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로 정의하였다. 자산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과 시장임대료만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저주거기준<sup>2)</sup> 미달 가구 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추정을 한 결과는 <表 20>과 같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전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59.4%이며, 이중 모자가구는 60.0%로 전체 평균과 크게 차이는 없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서 모자가구나 부자가구보다 최저주거기준미달이 더 높은 것은 정상적 가구구성에서 필요방수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최저주거기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으로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각종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면적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 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의 경우 37㎡(11.2평)임.
- 시설기준
  - 1) 부부침실 확보    2) 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 3) 만 8세 이상 異性 자녀는 침실 분리
  - 4) 노부모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
  - 5)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부엌 및 전용 화장실 확보
- 구조·성능·환경기준
  - 1)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일 것
  -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출 것
  - 3)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表 20〉 家口形態別 最低住居基準 未達 및 住居費 支拂能力 未達家口

(단위: %)

구 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A)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B)	A and B	A or B
모자	60.0	17.7	10.2	67.4
부부	43.4	37.2	17.8	62.8
부부+자녀	69.8	11.8	8.0	73.6
저소득층 전체	59.4	24.7	11.3	72.8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로자 소득 1분위 이하에서 최저기준미달 가구 비율이 30.7%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 소득 1분위 상한인 81.3만원보다도 더 낮은 소득평균을 지니고 있는 본 조사의 대상자<sup>3)</sup>는 소득 1분위 중에서도 하위집단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저 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하위집단일수록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비지불능력 미달가구를 살펴보면, 모자가구는 17.7%로 저소득층 전체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나, 저소득층 전체 중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주거비지불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11.8%, 비슷한 구성인 부자가정의 경우 14.6%가 주거비 지불능력미달가구로 나타난 것에 비해, 모자가구의 경우는 17.7%로 주거비 지불능력미달가구 비율이 높다.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남성가구주가구와 여성가구주가구의 비교에서도 남성가구주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가구비율은 21.9%인 데 비해, 여성가구주가구의 경우 27.4%로 주거비 지불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3) 저소득층 전체가 53.6만원, 모자가구 전체가 65.2만원임.

〈表 21〉 家口主 性別 最低住居基準 未達 및 住居費 支拂能力 未達家口

(단위: %)

구 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A)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B)	A and B	A or B
남성가구주	62.1	21.9	10.3	73.7
여성가구주	56.8	27.4	12.2	72.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토개발원, 2002년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

#### IV. 結論 및 政策的 含意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 모자가구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로 구성된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몇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자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할 때 가구주는 연령이 다소 낮고, 평균 학력은 높다. 경제활동상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이 동시에 많아 양분화된 고용상태를 나타내고, 직업은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중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주거실태와 관련하여 모자가구의 경우 주택 점유형태에 있어 전체의 51%가 보증부 월세, 8%만이 자가 등으로 저소득층 전체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평균 소득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안정성 측면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가구 분석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더 명확해지는데 객관적인 수치로도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저소득층 전체 중 단독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주거비지불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자료에 대한 성별 가구주비교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불능력미달가구가 27%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그 외의 주거관련 특성들 예를 들어 주택유형과 시설, 주택가격 등을 포함하는 주거수준 및 주거이동과 관련된 특성들은 주거이동의 용이성을 제외하곤 저소득층 전체와 저소득 모자가구층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모자가구의 특성보다 저소득으로 인한 주거의 열악성이 공통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복지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지출 항목 등을 살펴보면, 기존의 여러 저소득 모자가구 생활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비는 지원순위와 지출 항목에서 식료품비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항목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있어 저소득층 전체보다 모자가구의 경우 프로그램 인지도와 희망정도가 상당히 높아 주거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층 모자가구 가구주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 가구주와 비교하여, 저연령·고학력의 특징을 지니며, 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상시직과 일용직의 양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거비 지불능력 및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주거에 대한 안정성은 현격히 떨어짐과 동시에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희망여부는 높은 등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에 있어 저소득층 일반가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 학력, 소득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기존의 저소득층 가구주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소 틀린 점과 가구주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이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즉, 이중화 및 성별화된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로 설명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으로 인한 여성빈곤층의

특징과 주거의 불안정성인 주거빈곤에서도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점과, 모자가구의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인한 주거에의 요구사항이 합쳐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이를 고려할 때, 모자가구는 일반 저소득층에 비하여 주거실태에서 뚜렷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모자가구 주거실태의 차별적인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지원은 정책 목표인 빈곤의 탈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무엇보다 모자가구의 자립에 주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빈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로 인해, 주거빈곤양상에 있어 저소득층 전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안정성은 보다 더 요구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정책의 목표가 빈곤에의 탈출이며, 대상층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은 정책적응의 핵심과제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저소득층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주거복지정책의 적용만으로 저소득모자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구의 실태와 욕구에 맞는 주거정책의 적용이라는 방향성 아래 주거복지정책은 추진되어야 하며 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 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김경애, 「편부모 가족복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 『새로 짓는 우리집』, 가족과 성장담소, 한국여성민우회. 1999.

- 김미숙 외,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 나남출판, 2000.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9.
- 조흥식 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1998.
- 김수현 외, 「서울시 모자가정 실태와 자활지원 대책 - 성동구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본연구 중간평가자료, 2001.
- \_\_\_\_\_,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시정연 2002 특별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김수현,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자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eda.or.kr>)
- \_\_\_\_\_,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그 사회적 과제」, 『월간 복지동향』 제 18호, 2000.
- \_\_\_\_\_,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과제」, 자활지원협회 워크숍 자료집, 2000.
-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 사회복지, 세계화: 1990년대, 성평등의 신화와 불평등의 현실」, 『여성과 사회』, 1998.
- 박문수 외, 『주거빈곤가구의 실태와 최저주거기준 달성방안』, 대한주택공사, 2000.
-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 이선우 외,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2.
- 여성부,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 유정원,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제 4, 5, 6차 대우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0.
- 정미숙, 「여성가구주,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 어머니나 노동자냐」, 『경제와 사회』, 통권 51호, 2001.
- 최선화,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1999.

최선화 외, 「영구임대주택 빈곤모자가정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3호, 1997.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02.

George, L. K.,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view of Literature and a Agenda for Future Research", In N.E. Curter, D.W. Gregg, and M.P. Lawton(eds.), *Aging, Money, and Life Satisfaction*, New-York NY: Springer, 1992.

Pierce, D. & J. Brooks,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Pennsylvania: Wider Opportunities for Woman*, Women's Association for Women's Alternatives. Inc., 1997.

Burden, D., "Woman as Single Parents: Alternative Services for a Neglected Population", Gottlieb, N.(ed.), *Alternative Social Services for Wom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Mulroy, A. E.(eds.), *Woman as Single Parents*, Massacuhsetts: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8.

Roberts, Byran, *The Marketing of Citizens*, Arnold, 1995.

*Summary*

---

##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Low-Income, Single-Mother Families**

*Lee, Tae-jin, Noh, Unjung*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